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학생들에게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주·세화학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번영에 공헌할 知·德·體를 겸비한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학칙")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세화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조기졸업, 명예졸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학년 및 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본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계절수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방학
 - 3. 겨울방학
 - 4. 개교기념일(5월 6일)
 - 5. 휴무토요일
 - 6.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 ① 학급 수는 학년 당 12학급씩 전 학급을 36학급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학생정원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학급 수 조정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된 학급 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지며 학급당 35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3. 유급생
 - 4.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 ③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의한다.

제4장 입학, 전·편입학

제9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협의 요청한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제10조(입학시기 및 입학방법)

- ① 본교의 신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초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제9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해서는 제24조 제2항을 충족하는 시기 내에서 학교장이 신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본교의 입학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따로 공고하는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④ 본교의 신입생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보호자)

- ① 본교 재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자를 보호자로 할수 있으나 재학 중 학비 및 기타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 ① 본교를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자퇴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3조(전·편입학)

- ① 본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 ② 전학 및 편입학 대상자는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발한다.
- ③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및 편입학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 또는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학년배정은 외국 정규학교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 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제15조(휴학)

-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④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복학)

- ① 제15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 ②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복학하려는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또는 다음 달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학일 또는 개학월까지 복학할 수 있다.

제17조(자퇴)

- ① 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고사

제18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② 계절수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교육과정과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제19조(교육과정위원회)

-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원,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수업일수)

-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21조(수업시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교류·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고사·학업성적평가)

-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기 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
- ② 각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제23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 ① 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 개정
 -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한 각종 사항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장과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실정에 맞는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본교 교원,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24조(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명예졸업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제20조·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 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 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 ④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본교의 교과목 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 ⑤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목별이 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지필, 면접, 실험, 실기 등)
 -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 5.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 ③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명예졸업)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장 교외체험학습

제28조(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 체험학습')과 그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 ③ 개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2일 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매 학년도마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개인 체험학습의 일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총 체험학습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3학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학교장이 지정 한 날로부터 추가 20일 이내의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2. 국내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5일 이내로 한다. 단, 3학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학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추가 20일까지 연속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 국외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10일 이내로 한다. 단, 3학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학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추가 20일 이내로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을 비롯하여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에 직결된 중요 한 날로 판단한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5일의 가정학습을 추가하여 연속 15일 이내의 개인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다.
 - 6. 체험 학습의 운영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⑥ 제5항 이외의 체험학습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등 개인체험학습 지침을 바탕으로 제23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포상)

- ① 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공적심의회)

- ① 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 ② 공적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 ③ 공적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학생선도위원회)

- ① 본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하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퇴학처분)

- 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명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학교장은 퇴학 처분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다.
- ④ 본교에서 최종 퇴학 조치된 자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외의 지도 등)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 1. 구두주의
 - 2. 격리조치

- 3. 상담지도
- 4. 특별과제부여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학생들의 징계 외의 지도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6조(학생활동지원)

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37조(총학생회)

- ① 본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다.
- ② 총학생회는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③ 총학생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 2. 학교 행사의 기획·운영에 관한 활동
 - 3.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
 - 4.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
 - 5.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
 - 6. 학교 전통의 정립,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
 - 7. 각종 봉사 활동
 - 8.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④ 총학생회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수업료

제38조(수업료 징수 등)

- ① 학교장은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한다.

제13장 교육활동보호

제39조(교권 보호)

- ①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심각성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권침해 사안의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③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의 관련 세부 지침을 따른다.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학교규칙 개정절차

제40조(학교규칙 개정절차)

-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 2. 총학생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③ 발의된 개정안은 처리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 제·개정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3. 학칙 개정절차
- ④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규칙소위원회에서는 의견의 검토·수렴 결과가 반영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다.
- ⑥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학칙을 확정·공포한다.

제41조(학교규정 제·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 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40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1. 본 학칙은 198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학칙은 1995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8.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9. 본 학칙은 2002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0. 본 학칙은 2004년 4월 10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1.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2.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 13.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4.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15. 이 학칙 시행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6. 본 학칙은 2017년 4월 6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7. 본 학칙은 2019년 11월 1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8. 본 학칙은 2020년 8월 7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 본 학칙은 2023년 5월 12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